

■ 법률 칼럼

601A 면제: 불법입국/불법체류 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최근 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많은 한인들이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또 시민권자 자녀들을 두고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으로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실사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더라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못해 불법 체류가 된 사람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90년대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출국하게 되면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사실상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입국/불법체류의 불법성을 면제를 통해 본국에서 영주권을 무시하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는 601A 면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승인 요건

1) 이미 승인된 청원서 (Petition)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 즉 가족초청 (I-130), 취업이민 초청 (I-140), 종교이민 (I-360) 등의 청원서가 이미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National Visa Center 절차 (이민비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합니다.

2) 601A 면제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란 배우자와 부모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는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정답은 면제 신청인이 승인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친지 (qualifying relatives)는 시민권자/영주권 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고려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Factor는 아닙니다.

3) 601A 면제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 한 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겪게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증명이 가장 면제 준비에서 어려운 절차입니다. 상세한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민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육체적 고통, 정신적 어려움 (우울증 등)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 재정적 고통 등에 관한 증거들을 면제 신청시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하십시오.

▶ 1270호에 계속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구강 위생 이야기

칫솔은 약 1,000년전 중국에서 처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나무 가지 끝을 잘게 으깨거나, 동물을 털을 사용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일론이나 다른 탄력이 있는 화학섬유들을 사용하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칫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300여종이 넘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잔여 음식물이나 타액에 들어있는 단백질들과 어루어져 끈적이는 플라그(치태)를 만들게 됩니다.

2002년 Academy of General Dentistry에 따르면 미국인의 74% 정도가 치은염에서부터 심한 치주염에 이르기까지 일정 정도의 잇몸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회는 또한 평균 잇솔질 시간이 45초에서 70초 정도로 권장 잇솔질 시간인 2-3분보다 절반도 안되는 시간동안 잇솔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잇솔질과 관련된 미국치과의사협회 (American Dental Association)의 구강위생에 관한 권장사항에 대해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루에 최소 한 두번 잇솔질을 하십시오.
-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십시오.
- 칫솔은 3-4개월마다 교환하여 사용하십시오.
- 최소한 하루에 한번 치실을 사용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십시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권장사항입니다. 하지만 잇몸병은 개개인 마다 그 민감도나 병변의 진행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 상태를 충분히 이해한 뒤 그에 맞는 구강 위생 관리법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각종

보철 치료를 받으신 경우 이런 보철물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강 위생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하셔야 오랜 기간동안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사이에 농담처럼 주고받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한번쯤 생각을 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리고 싶은 치아들만 닦으세요. Only brush the teeth you want to keep.”

여러분은 어떤 치아들을 살리고 싶으세요? 전부 살리고 싶으시면 전부 닦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치아나 잇몸건강을 위한 잇솔질에 신경을 쓰면서 과연 허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우리 혀에는 입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약 50%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혀를 닦음으로써 입냄새를 75% 정도 줄일 수 있고, 치태 또한 1/3 가량 줄일 수 있으므로 잇솔질을 하면서 혀도 닦아 줌으로써 보다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사항은 잇솔질 회수나 시간보다 올바른 잇솔질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잇솔질 습관에 따라 잇솔질 방법도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구강 위생 증진을 위한 여러 구강 위생 용품들의 사용도 고려해야하므로 자신의 구강 위생 상태와 잇솔질 방법 등에 대해서 치과 전문의들에게 올바른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www.suhlalaw.com
info@suhlalaw.com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